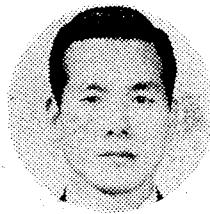


# 同一한 發明의 判斷基準

—特許法 第11條 先願主義에 있어서—



陳 今 煞

(特許廳 藥品擔當官・藥博)

## 【1】序論

우리나라 特許法第11條第1項의 前段에 「同一한 發明에 대하여는最先出願者에 限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다」라고 規定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先出願이 公告되기 前에 출원된 後出願이同一한 發明일 때에는 先出願者에 限하여 특허를 賦與한다는 内容이다.勿論 같은 날에同一한 發明이 그以上 출원되었을 때는 競合에 의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때에 있어서 實際審查 또는 審判等에 과연 「同一한 발명」을 무엇을 基準으로 하여 判断할 것인가가 問題가 된다.

더우기 現行特請法第57條 「發明의 技術的範圍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定한다」는 條項이 없는 舊特許法(法律1293號)施行時에도 이에 대한 混亂이 있고 現行法의 施行令, 施行規則, 審查便覽 및 大法院判例등에도 이에 대한 明確한 明文이 없으므로 더욱 問題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現在에 審判보다도 審查에 있어서 一部의 審查官들의 意見이 있어 1980.6.27 特許·實用審查官合同會議에서 「同一한 發明의 判斷基準은 先願과 後願의 특허청구범위만으로 한다」라는 統一된 結論을 再闡明한바 있다.

## 【2】法理論的 背景

우리 나라 特許法은 西獨, 日本等 大陸法系統의 權利主義(美國도 包含)에 立脚하여 特許는 創作者의 權利로써 國家에 대하여 發明의 確認을 要求하는 것이며, 이에 對하여 國家는 權利要件을 구비한 발명에 대하여는 拒絕할 수 없음을 확인하여 特허를 부여하는 것이

다.

따라서 절대로 2重特許를 주어서는 아니되는 취지에서 先願主義에 있어서 「同一한 發明」을 청구범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具體的으로 法的인 그 背景을 說明하면 1974年 以前特許法인 舊決의 第10條第1項 前段에 「同一한 發明에 對하여는最先出願者에 限하여 特許한다」라는 規定은 現行特許法第11條第1項 前段과 同一하지만 同一한 發明의 判斷에 있어서 선원의 特허청구범위만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의 기재사항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異論도 있었고 大法院判例인 65후 9(1965.8.24)에도 不分明하였다. 또한 現行法에 따라 아직改正되지 않은 1969年度版「產業別審查基準의 指針」에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서 판단하나 상세한 설명에 도면을 참고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명확한 해석을 하기가 곤란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現象이 日本에서도例外될수는 없어 엇갈린 日本大法院判例가 나오는동 「同一한 發明」의 판단기준에 混線이 있었다.

그리하여 日本에서는 日本特許法第70條에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特허청구범위로 한다」는 新設規定을 두었고, 우리도 우리나라 現行特許法第57條에 日本과 同一하게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特허 청구범위의 기재사항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同一한 發明」의 判斷基準을 特허청구범위만으로 함을 명확히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特許法第11條와 同一한 日本特許法第39條의 解說(工業所有權法 逐條解說, 日本特許廳編 P84)에도 「先願이 出願公告될때까지 出願한 後願은先願의 特허청구범위와 比較하고 同一하지 않으면 特허가 된다. 그리하여 선원명세서의 特허청구범위에 기

同一發明의 判斷基準은 先願과 後願의 許特請求範圍만으로 한다.

以上 6月27日 特許·實用審查官合同會議서 再確認

재되어 있지 않으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과同一의 발명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출원한 후원은 특허되는 것으로 된다.]라고具體的으로說明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先·後願의發明의同一性判斷基準은 특허청구범위만으로 삼기때문에 선원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고 그 선원의 특허청구범위에 주장하지 않은 것은後願의 특허청구범위에 주장하였다면 당연이 특허를 허여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先願主義와 같은西獨特許法(1972年度)第4條第2項先願權(Älteres Recht)의解說(Dr.V.Tetzner著, 西獨特許制度의解說P25)에도「同一性判斷의審查에 있어서 선원의 특허청구범위의 항을 기초로 하고 이와 후원의 특허청구범위의 항을對比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않된다. 선원의 상세한 설명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그 특허청구범위의 항에는 근거를 찾아볼수 없는 것은同一性判斷의審查에 있어서는考慮의對象으로 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와 같은 것은 후원의 이에對應하는 특허청구범위의 항에 대하여特許障礙로 되는 일이없다.例를들면 선원에는 특허청구범위에方法을특허로하는것이나이의상세한설명에method의實施를爲하여裝置가기재되었다면후원의특허청구범위에서이裝置에對하여特許ability을가진다」라고說明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美國과는약간의差異가있지만先發明을判斷하기爲한抵觸審查制度(Interferences)에서美特許法第135條 및 同施行規則第201條(b)項에「抵觸審查는各當사자에특허될수있는실체적으로同一發明에對한特許請求範圍를갖는서로다른當사자의계류중의출원사이에서宣言判斷된다」라고規定되어 있어 이역시 특허청구범위로 판단의기준을 삼고 있는 것이다.

### 【3】 實際審查에의 適用

實際審查에 있어서特許法施行規則第42條에規定된 때로 특허청구범위가同一한先願이查定 또는審決이確定될때까지後願의處理를기다려야한다. 선원이 출원공고되면 이때后원을이로서거절하고 선원이 거절되면 이거절된 이유와同一하게거절해야한다.

이때에 선원이 완결될 때까지 기다린다는理由는 선원이最初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주장하지 아니하였지만要旨が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특허청구범위를 후원과同一하게補正한다면지分割出願할 경우등이 있고 또한特許法第11條第3項과같이先願이나, 同日의出願이무효 또는 취하 또는 포기된 때에는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기때문인것이다.

또한 선원이出願公告後에後願을거절하는것은出願內容을출원공고전까지秘密에屬하는것이므로. 만일 출원공고전에 후원출원인의開示要求를들어준다면선원자의출원내용이부당하게漏泄될염려가있기때문인것이다(審查便覽40.06A).

그리고先出願을拒絕查定한때에는 먼저先出願이거절된이유를우선後出願者에게도하고그出願을拒絕查定할때에先出願이있었다는事實을通知한다(審查便覽45.01A·4)

### 【4】 問題點

先願主義에 있어서同一한發明을特허청구범위만으로判斷한다면 다음과같은 몇가지問題點을生覺할수있다.

첫째로出願의상세한설명에만例를들면A·B란2發明이기재되어있고특허청구범위에는A만을主張하여출원공고되었을경우,後願의상세한설명에先願과같이A·B란2發明이기재되어있고그특허청구범위에는B만을청구하고있어同一한發明이아님으로出願公告될때에A·B기술내용이2番公開되는結果가된다.

이와같이後願의發明에특허권을부여한다는것은公開의代價(rewards)으로發明을保護해주는本來의特許制度의취지에서볼때妥當치않다고生覺된다.

둘째로特許權의取得을目的으로하지않고美國의防護出願(Defensive Publication Application)과같이오직技術을公開만하여他人이특허를얻지못하게하기를원할때에선원의상세한설명에기재해놓으면他人의後願을거절할수있는것을번거롭게別途로출원하여특허권을確保해야만되는문제점이있는것

이다.

세제로 先願의範圍를 特許請求範圍로 限定하여 두면 선원의 심사처리가 確定될때까지 後願의 심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더욱이 出願早期公開制度와 審查請求制度를 採擇時 同一한 發明에서 後願만이 審查請求가 申請되었을 때 선원이 處理될때까지 保留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審查請求도 되지 않은 先願을 심사청구분과 同一하게 먼저 심사해야되는 모순점이 發生되는 것이다.

其他 先願이 취하, 포기, 두효되었을 경우 後願에 영향을 꼭 주어야하는 등의 問題點이 있는 것이다.

### 【5】改正法에 第6條의 2 新設

勿論 法이란 모든 케이스의 適用에 있어서 完璧을期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特許法第11條도例外가 될 수 없이 問題點이 없지 않지만 最近技術의高度化와 多樣化로 因한 특허심사의複雜性 그리고 多項制度와 더불어 出願早期公開制度 및 審查請求制度의導入에 따라서 特許要件으로 下記와 같은 第6條의 2를 新設하게 되었다.

特許出願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날 前에 한 다른 特許出願 또는 實用에 案登録出願으로서 당해 특허출원후에 出願公告 또는 出願公開된 출원서에 最初에 첨부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그 발명 또는 고안을 한 자가 당해 특허출원 발명의 발명자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을除外한다)과 同一한 때에 그 발명에 대하여는 第6條第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당

해 특허출원시의 출원인이 당해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동일한 경우에는例外로 한다」

本條의 設置理由는 앞에서 詳述한바와 같이 同一한 技術內容을 2重으로 公開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제도를 채용함에 따라 先願의 地位를 認定해 두면 先願의 處理를 기다림없이 後願을 處理할수 있게하기 위하여, 公開만을 원하는 기술에 대하여 별도로 出願하고 심사청구까지 해야하는 2重負擔을 줄이기 為한 것들을 들을수 있다.

### 【6】結 言

現行 우리나라 特許法第11條의 先願主義에 있어서 「同一한 發明」의 判斷基準은 先願明細書의 詳細한 說明으로 해야 된다는 異見도 있을수 있지마는 보다 法理的이고 지금까지 施行時 아무 問題點이 없었던 「特許請求範圍」만으로 하는 것임을 再三 閣明하는 바이다.

이에 따라 發生할수 있는 若干의 問題點과 改正法(現在 國會上程中임)에서와 같이 多項制度와 出願早期公開制度 및 審查請求制度를 採擇함에 따라 더욱 많이 發生하게될 問題點을 考慮하여 改正特許法第6條의 2를 新設함으로서 보다 完璧한 特許制度를 確立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改正法이 施行되더라도 現行特許法第11條의 「同一한 發明」에 對한 判斷基準은 特許請求範圍만으로 하는 것은 變함이 없고, 이 모든 事項을 次期 審查便覽改正時 插入될 것임을 附言하는 바이다.

自身의 周邊을 淨化하여

不條理를 掃蕩하자!